## 한국체육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

일부개정 2023. 8. 24. 규정 제892호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」 개정(2023. 5. 15.) 시 훈련학생총괄팀장 보직이 삭제되고, 2023년도 자체 보안감사(2023. 5. 18.) 시 보호지역 추가가 요구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훈련학생총괄팀장 보직이 삭제됨에 따라, 분임보안담당관, 보안심사 위원회 위원, 무기고(통제구역) 관리책임자를 "훈련팀장"으로 변경함. (안 제3조, 제5조, 제47조제1항제3호)
- 2023년도 정부 보안업무 점검지표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검토 의무 조항을 신설(안 제14조제4항)
- 2023년도 자체 보안감사(2023. 5. 18.)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호 지역에 소화약제실, CCTV 관제실을 추가하여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함.(안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)
  - ※ 소화약제실: 신축 도서관 6F 기록관 및 도서관 보존서고 소화약제실
  - ※ CCTV관제실: 본관 안내실, 정문 방호원실, 생활관 남·녀 기숙사 사감실, 수영장 1층 사무실, 신축도서관 지하2층 기계실

#### 3. **주요 토의과제** : 없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「보안업무규정」, 「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붙 임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한국체육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"훈련학생총괄팀장, 시설총괄팀장"을 "시설총괄팀장, 훈련팀장"으로 한다. 제5조제3항제3호 중 "훈련학생총괄팀장, 시설총괄팀장"을 "시설총괄팀장, 훈련팀장"으로 한다.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제45조제1항제2호 중 "문서고"를 "문서고, CCTV 관제실"로 하고, "기계실"을 "기계실, 소화약제실"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2호가목 중 "문서고(재무)"를 "문서고(재무), CCTV 관제실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기계실"을 "기계실, 소화약제실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"훈련학생 총괄팀장"을 "훈련팀장"으로 한다.

부 칙(제892호, 2022. 8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3조(보안담당관의 지정) 본교의 보안담당관은	제3조(보안담당관의 지정)
총무과장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의 업무를	
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	
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, 다음 각 호와	
같이 해당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	
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.	
1. 분임보안담당관 : 교무과장, 기획평가총괄	1
팀장, 훈련학생총괄팀장, 시설총괄팀장	시설총괄팀장, 훈련팀장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5 <b>조(보안심사위원회)</b> ①·② (생 략)	<b>제5조(보안심사위원회)</b>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	3
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위 원: 교무과장, 총무과장, 기획평가총괄	3. 위 원 :
팀장, 훈련학생총괄팀장, 시설총괄팀장	, <u>시설총괄팀장, 훈련팀장</u>
4. · 5. (생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비밀취급인가의 대상) ① ~ ③ (생 략)	제14조(비밀취급인기의 대상) ①~③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④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
	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<b>제45조(보호지역 지정)</b> ① 본교의 보호지역은	제45조(보호지역 지정) ①
다음과 같다.	1 (=1=11=1 =1 0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  2
2. 제한구역 : 총장실 안내실, 기록관, 문서고,	
예비군대대, 기계실, 방송실, 전기실,	<u>CCTV 관제실</u> — <u>소화약제실</u>
전산실 3. (생 략)	 3. (현행과 같음)
(2) (생 략)	(2) (현행과 같음)
제47조(보호지역 관리책임) ① 보호지역의 관리	제47조(보호지역 관리책임) ①
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	
1. (생략)	· 1. (현행과 같음)
2. 제한구역	2. 제한구역
가. 총장실, 상황실, 기록관, 문서고(재무),	7} <u>,</u>
: 총무과장	
나. (생 략)	
다. 기계실, 방송실, 전기실, 문서고(시설)	다 <u>소화약제실</u>
: 시설총괄팀장	:

현 행	개 정(안)
라. • 마. (생 략)	라. • 마. (현행과 같음)
3. 통제구역	3. 통제구역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무기고 : <u>훈련학생총괄팀장</u>	나 : <u>훈련팀장</u>
②·③ (생 략)	②・③ (생 략)
	부 칙(제892호, 2022. 8. 24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